

[별지2]

공연장 안전관리 수칙 서약서

1. 무대 설치와 관련하여 행사 2주 전에 사전 허가를 받는다.
 - 무대에서 작업하는 모든 인원 및 장비 반입/반출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공연장 장비 및 비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한다.
 - 무대에는 비계(飛階, scaffolding) 등을 설치할 수 없다.
2. 무대에서의 모든 작업 및 시설물 사용은 관련분야 직원 입회 하에 진행해야 하며 직원의 지시를 따른다.
3. 무대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이 상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4. 무대 및 분장실에서 취사, 취식, 흡연, 음주, 도박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.
5. 공연장 내에 음료와 음식물 및 화환은 반입할 수 없다.
6. 공연장 내에서는 가연물, 발화 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과 사용을 금지한다.
7. 무대 작업자는 안전을 위한 적합한 복장 및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.
8. 무대 위에서는 톱, 망치, 전동공구, 페인트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수 없다.
9. 무대사용은 대관된 지정시간에 한하며, 출연자는 리허설 및 공연시간 외에는 무대 출입을 삼간다. 무대 리허설은 공연시작 1시간 전까지 종료해야 한다. 공연시작 30분 전부터 공연종료까지 출연자 및 관계자의 면회를 삼간다.
10. 무대에 허가 없이 용접 및 전기설치를 할 수 없다. 전기 및 전식 사용 시에는 관련 면허 소지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 안전기관 또는 허가 업체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.
11. 공연 무대 감독은 화재요인에 각별히 유의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다.
12. [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] 제 10조에 의거 무대의 피난 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 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폐쇄할 수 있는 무대 세트 및 장비의 설치를 금지한다.
13. 화재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관계직원 및 안내방송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.
14. 행사 주관자는 장애인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.
15. 공연 종료 후 무대시설은 원상복구하며, 공연에서 발생한 모든 부산물은 대관자 및 무대 사용자 책임 하에 수거하여야 한다.
16. 본 수칙의 세부 사항 및 예외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.
17.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, 위반한 단체는 향후 1년 간 대관이 금지된다.

년 월 일

소 속(공연단체명)

이 름

(서명)

서울대학교